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공고
제2024-06호

2024년 제3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공고

2024. 8. 7.

 부산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 디지털·저탄소 등 산업구조 변화 흐름에 대응하여 지역별 상황에 부합하는 훈련과정을 적시에 공급
 - 지역·산업 현장의 세부 훈련 수요 등을 조사하고, 그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및 훈련기관의 발굴·심사 추진
- 훈련과정을 운영하거나, 그에 참여하려는 지역 훈련기관 및 훈련생에 대한 지원을 우대함으로써 산업구조 변화 대응에 필요한 훈련운영 및 인력양성 활성화 추진

□ 사업 목적

- 산업구조 변화, 고용 위기 등에 따라 어려움이 있는 산업 분야의 재직자, 실업자 등의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 활성화

□ 수행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22. 1. 11. 일부개정, ’23. 1. 12 시행) 제12조, 제18조, 제19조, 제2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 사업 내용

- 노동이동 및 고용유지 등을 위한 훈련·인력수요를 기반으로 훈련과정을 발굴·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훈련 참여를 지원

□ 지원산업 및 직종

구분	주요 내용	비고
지원대상 산업·직종	○ 산업구조의 변화, 코로나19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경영 또는 고용상의 어려움이 발생 및 예상되어, 해당 분야 종사자 등에게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이 시급하고 클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분야	재직자 등의 고용유지, 이·전직 지원
육성산업·직종	○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인력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분야	인력 수요 발굴 및 양성 분야

2 2024년 제3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모집

□ 모집 훈련인원

○ 500명

□ 제1차 훈련과정 모집 산업·직종

○ 부산지역 육성산업·직종

-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발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지역 경제 성장 및 고용시장 안정 등을 위하여 인력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 및 직종
- 신청 유형
 - (전직 및 취·창업훈련)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 (신규 채용자 훈련)
 - (고용유지훈련)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재직자 훈련)
- 부산지역 주력산업 분야별 정의에 부합하는 훈련과정 설계

주력산업 분야	주력산업 정의	육성품목 및 산업 육성 방향
초정밀소재부품산업	○ 원자재로부터 합성 및 가공공정을 거쳐 다양한 기능과 형상의 소재 또는 초정밀 부품을 만드는 제조업으로 가공효율 극대화를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 수요자 맞춤형 제품을 제공하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연·인공 소재 - 공정(탭밸브, 금형) 부품 - 동력전달 부품 - 공정 제어 ○ 산업 육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정밀 소재·부품·장비 분야 첨단가공 및 공정혁신 - 디지털 전환 기업생태계 구축 · 첨단소재 가공·공정 기술 확보를 통한 디지털 기반 생태계 구축 · 가공·공정 디지털화, 정보 지식 서비스화 등 제조회경 혁신 - 내연기관부품을 미래수송기기 부품으로 전환 - 디지털 기반 기술고도화 - 초정밀소재부품산업 인재 육성 · 첨단소재부품 가공·공정 기술, 모니터링 기술, 데이터 정보 처리 기술 등 현장 적합형 인력 양성 및 기술 역량 강화 교육

주력산업 분야	주력산업 정의	육성품목 및 산업 육성 방향
저온고압에너지저장 공급시스템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소, 암모니아, LNG, LPG, 메탄올 등 친환경에너지 공급 및 관리를 위한 핵심공급 기자재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극저온, 초고압 기술이 필요한 에너지의 저장·이송·관리 등을 다루는 제품 및 서비스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용 가스 혼합 분리 - 저장용기 부품 - 연료 이송장치 ○ 산업 육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제조업의 IT기술 컨버전스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 · 가스 누출 감지 시스템 등 디지털기반 초고압가스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발 · IT기술이 접목된 고안전성 밸브 개발(piping valve, 고효율부품, 응용센싱기술 등) - 에너지부품 기술강화 생태계 구축 · IT 융합 전주기 기술 지원 - IT기술 접목 에너지부품 개발 지원 플랫폼 구축
실버케어테크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기술을 활용하여 생애주기별 노쇠 정도 변화에 따른 신체 기능 저하를 극복하고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실버케어기기 및 의약품, 건강관리 등을 다루는 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성품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치료기기 - 생체신호 측정제어 장치 - 재활보조 기기 - 고령친화 용품 ○ 산업 육성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케어 제품 및 서비스 실증 테스트베드 구축 및 빅데이터 분석 기반 제품 기술개발 - 실버케어 관련 의료산업 기술 고도화 · 스마트케어 서비스용 상시 건강 모니터링 디바이스 개발 · 스마트케어 서비스용 지능형 건강정보 활용 시스템 개발 · 딥러닝 등 인공지능 의료기술 개발 - 진단·예측·관리 등 의료데이터 기반 인공지능 역량 적용 전문가 양성

자료: 부산광역시, “2024년 부산지역산업진흥계획”, 2024

○ 모집 육성산업 · 직종

부산지역 주력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초정밀 소재부품 산업	132	직물 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180101 섬유생산 180102 섬유가공
	139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180101 섬유생산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140704 적재기계운전 170101 화학물질·품질관리
	221	고무제품 제조업	22199 그 외 기타 고무 제품 제조업	170402 고무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70401 플라스틱
				230603 비파괴검사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160103 금속가공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160104 표면처리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90305 전자부품개발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160103 금속가공 160105 용접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160103 금속가공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1111 강선 건조업	150201 절삭가공	
			150802 선체건조	
			150807 선박정비	
			190106 전기설비설계·감리	
			190108 전기자동제어	

부산지역 주력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초정밀 소재부품 산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80201 디자인 150301 기계조립 1903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190305 전자부품개발 190312 가상훈련시스템개발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201 유선통신구축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50801 선박설계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저온 고압 에너지 저장 공급 시스템 산업	2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70401 플라스틱 230603 비파괴검사
			251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 발생기 제조업
259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5123 압축 및 액화가스용기 제조업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5913 자동차용 금속 압형제품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160103 용접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020401 생산관리 160104 표면처리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020401 생산관리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00201 유선통신구축 200202 무선통신구축 230603 비파괴검사	

부산지역 주력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저온 고압 에너지 저장 공급 시스템 산업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8119 기타 전기 변환장치 제조업	
		28123 배전반 및 전기 자동제어반 제조업	
	283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108 전기자동제어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160103 금속가공 160105 용접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9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299 그 외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50201 절삭가공 160103 금속가공
	351 전기업	35119 기타 발전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107 전기공사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80201 디자인 150301 기계조립 1903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190305 전자부품개발 190312 가상훈련시스템개발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201 유선통신구축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150801 선박설계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631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1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00203 통신서비스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부산지역 주력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실버 케어 테크 산업	152 신발 및 신발 부분품 제조업	15220 신발 부분품 제조업	180204 신발개발·생산
	213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 관련제품 제조업	170202 기초유기화학물
			180101 섬유생산
			190309 의료장비제조
	222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49 기타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70401 플라스틱
			230603 비파괴검사
	262 전자 부품 제조업	26295 전자감지장치 제조업	020401 생산관리
			160104 표면처리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64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020401 생산관리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00201 유선통신구축
			200202 무선통신구축
			230603 비파괴검사
271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060101 의료기술지원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형 기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272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광학 기기 제외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190305 전자부품개발	
		190201 전자제품개발기획·생산	
281 전동기, 발전기 및 전기 변환·공급·제어 장치 제조업	28121 전기회로개폐, 보호장치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부산지역 주력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소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직종(NCS 소분류)
실버 케어 테크 산업	289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190105 전기기기제작 190108 전기자동제어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90202 전자부품기획·생산
	291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169 기타 물품 취급장비 제조업	150501 기계장비설치·정비 160103 금속가공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160105 용접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080201 디자인 150301 기계조립
		58222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90302 산업용전자기기개발 190305 전자부품개발 190312 가상훈련시스템개발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200102 정보기술개발 200201 유선통신구축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200101 정보기술전략·계획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63111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200203 통신서비스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기타*	952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 고용노동부·현대자동차·블루핸즈의 「친환경차 정비 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MOU체결」 결과에 따라
육성대상산업·직종으로 선정

□ 훈련기관 참여 요건

○ 법령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

※ 직업능력개발법령상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의 운영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의 유형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12조 등 참조)

- ①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③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 ⑤ 그 밖에 법 제12조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려는 기관의 장이 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등급 미보유 기관이더라도 참여 가능

- (인증보유 기관) 심평원의 인증(1~5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 준법성 및 재정건전성 심사 미진행
- (인증 미보유 기관) 심평원의 인증평가를 거친 이력이 없는 신규 기관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 판단
 - (‘인증유예’ 및 ‘조건부 유예’ 판정 기관) 준법성 및 훈련성과 등이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참여 불가
 - (인증평가 이력이 없는 신규 기관) 아래의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 여부 판단

※ 신규훈련기관 대상 심사기준

- 최근 1년간(훈련과정 인정 신청서 접수일 기준) 아래 4개 항목에서 기준에 따른 총 감점이 20점 이상인 경우 부적정 판단

구분	필수 확인 항목(4개)	판단기준 및 참고사항 등
준법성	①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정명령) 처분당 1점 감점 ○ (계약해지 또는 인정취소, 해당 과정 또는 해당 직종 위탁 인정 제한) 처분당 5점 감점 ○ (전과정 위탁 인정 제한) ① 제한기간 6개월 미만: 10점 감점, ② 제한기간 1년 미만: 15점 감점, ③ 제한기간 1년 이상: 20점 감점 ○ (지도점검 불응에 따른 과태료 부과 이력) ① 과태료 부과 1차: 10점 감점, ② 과태료 부과 2차: 20점 감점
	② 임금체불 이력 여부	○ ‘시정지시일’ 또는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감점
	③ 최저임금 위반 이력 여부	○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시정 불이행으로 기소 의견 송치된 경우, 검찰송치일 기준으로 1인당 5점 추가 감점
재정건전성	④ 세금체납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 체납) 10점 감점 ○ (지방세 체납) 10점 감점 ※ 서류 미제출, 기관정보 불일치, 발급기간 미준수, 발급처 직인 없음, 서류 식별 불가, 불인정서류 제출은 10점 감점 적용

○ 훈련기관(시설) 유형별 제출 증빙자료

지정시설	제출 증빙자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훈련법인·단체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지정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해당 학교 학칙
평생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교육과정편성표
학원(평생직업교육학원)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 교육부(www.neis.go.kr)에서 발급한 교습비 등 게시표
사업주·사업주단체 등의 시설	○ 정관 ○ 소속 회원사 명단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기관)	○ 훈련기관 지정서(추천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
기타	○ 정관

○ 훈련시설의 실시가능직종 관련

- 훈련기관은 그 유형에 따라 실시 가능 훈련직종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여 신청(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4조 등)
- 다만, 지정직업훈련시설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시 가능 직종을 추가·변경 가능
- ※ 지정직업훈련시설에서 현재 실시가능직종에 포함되지 않는 훈련과정을 운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예상소요기간 1~2주, 법정처리기간 20일)

□ 훈련과정 신청

○ 훈련과정은 **집체훈련과정**으로 한정

※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비대면 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훈련과정 심사·승인 이후 「집체훈련의 원격 대체 지침」 등에 따라 변경

○ **훈련기관별 훈련과정 최대 신청 수: 3개**

○ 신청 유형을 구분하여 공모, 접수

- (고용유지훈련)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
- (전직 및 취·창업훈련)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

○ NCS 필수 적용 기준 충족 여부 면제

- 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자유롭게 훈련과정을 편성할 수 있으며, 훈련과정 편성 시 NCS 기준 미적용 가능
 - 해당 NCS 시간·장비·시설 기준을 참고하여 훈련과정 개발 필요
- 단, 훈련비의 지원단가 등의 적용을 위해 NCS 직종 세분류는 반드시 제시, NCS가 개발되지 않은 직종은 유사·적정한 직종으로 설정(심사 시 NCS 설정의 적정성 판단)
 - 훈련과정의 내용상 가장 많은 시간으로 편성된 직종을 NCS 직종으로 제시

○ 훈련과정 유형별 과정 편성 기본요건

구분	과정 편성 기본요건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대상별 훈련과정 최소 훈련시간 및 훈련기간 - (전직 및 취·창업훈련) 10일 이상, 40시간 이상 - (고용유지훈련) 2일 이상, 16시간 이상 ※ 각 훈련사업의 1일 훈련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최대 훈련시간 720시간으로 제한, 720시간을 초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초과 사유 및 필요성을 반드시 기재
강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시설(강의실)의 최소 면적 기준 - (전직 및 취·창업훈련, 고용유지훈련) 10인 기준 30㎡(1인 추가 시 1.5㎡) ※ 정원수가 위에 제시된 기준 인원수보다 적은 경우에도 해당 면적은 충족
실습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습실(실습장)의 최소 면적 기준(권고) - NCS 적용과정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훈련과정이 분류된 NCS 직종상 훈련 기준의 50% 면적 ※ 1명 추가 시 1인당 추가 면적기준 적용 ※ NCS 훈련기준상 기준인원이 10명 미만인 실습실의 최소면적은 기준 인원의 필요한 시설 면적 기준 100% 적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사항 - 그 외 관련 법령 규정(고시), 공고 등에 제시된 필수요건 준수

○ 훈련비 우대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를 기본 인정(훈련비 심사 및 정산 미실시)

※ 단, 다른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과정을 부산지역에 옮겨 개설하는 등 특성상 기본 지원 단가(100%)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훈련비 우대 미적용

- 육성산업·직종 훈련과정은 훈련비 심사 절차를 거쳐 지원단가의 300%까지 지원 가능(훈련비 정산)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인정 제한 분야

① 세미나, 심포지엄 등 단순한 정보교류나 시사 및 일반상식 등 교양의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② 직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기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취미활동, 오락 및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③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부여할 목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정규 교육과정

* 단, 사업주 위탁훈련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5조제3호가목(사내대학), 나목(기술대학), 다목(계약학과)은 제외

④ 창업이나 취업 시 「의료법」 등 관련법 위반의 우려가 있는 과정

⑤ 변호사·변리사·공인중개사·공인노무사 등의 자격시험 및 공무원 공채시험과 관련된 과정 등 지원의 필요성이 적은 과정

⑥ 타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 공공기관에서 지원받는 훈련과정

⑦ 근로자의 직무와 관계없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주가 자신이 사용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훈련과정*(원격훈련과정 포함). 단, 근로자가 이·전직을 위해 자격취득에 필요한 훈련과정**은 제외

* 재직자의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개인정보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개선, 산업 안전보건 공통 법정직무훈련 과정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취업서비스(전직지원) 관련 훈련과정

⑧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원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한 과정

· 훈련시장 공급이 과다하거나 종사인력이 많아 국가차원의 인력양성 필요성이 낮은 분야의 과정 등

· 외국어 습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과정

· 사업장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할 목적으로 물품을 제작 또는 실습물을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 발생 우려가 있는 과정

○ 중복 훈련과정의 참여 제한

- 중복 훈련과정
 - 훈련기관 A가 통합심사를 거쳐 훈련과정 B를 이미 운영하는 경우(훈련물량 증대 목적)
 - 훈련기관 A가 이전 통합심사에 훈련과정 B의 심사를 신청하였으나 훈련과정의 내용상 부적합 판단을 받아 운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훈련심사 우회 목적)
- 중복 훈련과정의 소명
 - 중복훈련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부산인자위는 해당 훈련기관에 훈련과정의 개설 필요성, 타 훈련과정과 내용상의 차이점 등에 대해 소명서 및 증빙자료 제출 요구

□ 훈련 지원대상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직업훈련에 참여하려는 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제외 대상) 등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는 본 사업상 훈련과정에 참여 불가
-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의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지원제외 대상 참조

□ 훈련생 지원내용

○ 훈련비

- 훈련참여자에게 계좌 유효기간 중 1회에 한하여 훈련비를 전액 국비 지원
- 계좌한도에서는 200만 원 이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우대

구분	주요 내용
훈련비가 200만 원 이상인 경우	○ 계좌한도에서 200만 원만 차감 - 참여자의 잔여 계좌한도가 200만 원 미만일 경우 잔여 금액 차감
훈련비가 200만 원 이하인 경우	○ 계좌한도에서 해당 금액만 차감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훈련비 지원액) 참조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중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 여타 훈련비 전액 지원 과정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사람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참여로 인정하여 훈련비 전액 지원

* (전액지원과정)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일반고 특화과정,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K-Digital Training, 디지털 기초역량훈련과정(K-Digital Credit), K-Digital Training 단기 심화과정

○ **훈련장려금**

-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 출석률 80% 이상이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경우 훈련장려금 지원(월 11.6만 원 등)

※ **훈련장려금의 지급 요건(국민내일배움카드 기준 변경 시, 변경될 수 있음)**

- ①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실업자, 주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②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하는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월 최대 36만 원)
- ③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자

○ **특별훈련수당**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 중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훈련장려금과 더불어 **특별훈련수당 추가 지급(월 최대 20만 원)**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사업상 특별훈련수당 지급 요건

- (훈련과정) 부산인자위에서 선정한 **육성산업·직종에 해당하는 훈련과정일 것**
- (훈련시간) 훈련과정의 **총 훈련시간이 350시간 이상일 것(1일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것)**
- (훈련생)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상 **훈련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것(단,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제외)**

※ 단위기간 출석률이 80% 이상일 경우, '단위기간 출석일 수×1만 원'으로 산정

○ **생계비 대부**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상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자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리로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사업 개요

- ① (지원대상) 총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신청일 기준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은 자
- ② (신청자격) ①가구원 기준 중위소득이 80% 이하일 것, ②비정규직 근로자, 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③ (대부한도) 1인당 월별 200만 원 이내 대부(총 대부한도는 1,000만 원 한도)
*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재난지역은 월 최대 200만 원(1인당 2,000만 원 한도)
- ③ (상환조건) 연 1.0% 금리(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2년 거치 4년 분할 상환,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중 선택)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평가표

심사영역		심사항목	배점							
I. 훈련기관 심사	1. 훈련기관 심사*	① 준법성 및 재정 건전성	적정 / 부적정							
	1. 훈련과정 NCS직종 분류의 적정성	① 모집 산업·직종과의 부합 여부	적정 / 부적정							
2. 훈련 기본요건의 적정성		② 모집 산업·직종에 따른 NCS 설정의 적정성	적정 / 부적정							
	II. 훈련과정 심사	3. 훈련과정의 적정성	①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의 직종 부합 여부	적정 / 부적정						
② 과정 편성 기본요건(훈련시간 및 기간, 강의실 등 최소 기준) 충족 여부			적정 / 부적정							
③ 훈련과정의 적정성		① 인정제한 분야 해당 여부	적정 / 부적정							
		② 훈련과정의 인정 필요성 여부	적정 / 부적정							
		가. 훈련 및 인력 수요의 부합성	적정 / 부적정							
		나. 훈련과정의 중복성 여부	적정 / 부적정							
		가. 훈련내용	5	4	3	2	1	0	적정	부적정
		나. 훈련교·강사	5	4	3	2	1	0		
다. 훈련장비		5	4	3	2	1	0			
라. 훈련시설		5	4	3	2	1	0			
마. 훈련방법	5	4	3	2	1	0				
4. 훈련목표의 적정성	① 연간 훈련가능인원**의 적정성	적정 / 부적정								
	② 훈련목표 설정의 적정성 -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훈련생 만족도 등	적정 / 부적정								
5. 훈련비***의 적정성	① 훈련비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기본 요건 충족 여부	적정 / 부적정								
	② 훈련비 산정의 적정성	적정 / 부적정 / 조정								

*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인증 미보유 기관만 심사

** 훈련정원과 동일

*** NCS 직종별 훈련비 지원단가의 130% 초과 시 심사(통합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

※ 심사 결과, 심사항목 중 '부적정' 항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훈련과정 선정 불가

※ 신청서 상에 기재된 훈련시설·장비 현황이 실재와 상이할 경우 훈련과정이 최종 불승인될 수 있음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선정 요건

○ 훈련비 심사 신청 기본 요건

- 육성산업·직종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그와 관련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훈련과정
- 훈련교·강사, 훈련내용, 훈련대상자, 실습비를 고려할 때 **고급·특수과정**에 해당

< 고급·특수과정의 요건 >

연 번	요 건	세 부 내 용
1	훈련 교·강사	○ 훈련교·강사 전공, 경력, 자격 등이 우수한 훈련과정 ① 해당 분야 관련 경력 10년 이상 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③ 기능장 또는 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
2	훈련내용	○ 난이도가 높은 훈련과정(Level 5 수준 이상) ○ 타 훈련기관에서 진행하지 않는 특수한 과정
3	훈련 대상자	○ (선행학습) 4년제 대학(유사 전공 포함) 전공자 또는 고급 및 특화 세부기준별 NCS 목표수준 미만의 능력단위 및 직무능력을 이수하거나 이와 동등한 자 ○ (직무경력) 현장 경력 3년 이상 등 전문 인력 및 중간관리자, 관리자, 책임자 등 ○ (자격증 등) 기사, 1급, 기술자 초급 등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그와 동등한 능력이 있는 자
4	실습비	○ 고가의 소모성 실습비가 많이 소요되는 과정 ○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최신 경향의 훈련 장비를 사용하는 과정

※ 각 요건별 세부내용 중 한 개 이상 충족할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

→ 1~4 요건 중 2개 이상 충족할 경우 **고급·특수과정으로 인정**

- NCS 지원단가의 130%보다 높은 훈련비를 지원받는 훈련과정은 회계정산 대상에 포함, 회계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고용센터가 정산 실시)

※ (정산 시기) 정산 대상인 훈련과정이 종료되는 시점 이후로 향후 결정

※ (정산 방법) 심사 및 훈련비 승인 결과에 해당하는 '훈련실시계획서, 훈련비산출내역서'와 '훈련비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세부 정산계획은 정산 시기에 재안내 예정)

※ (정산 시) 고정비 및 변동비 비목 구분

고정비	훈련 실시인원(중도탈락자 포함) 기준으로 인정되는 훈련비 비목	강사료, 시설비(임차비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홍보비
변동비	훈련생 출석률 기준으로 인정되는 훈련비 비목	교재비, 실습비, 장비비, 기타훈련 비용, 운영지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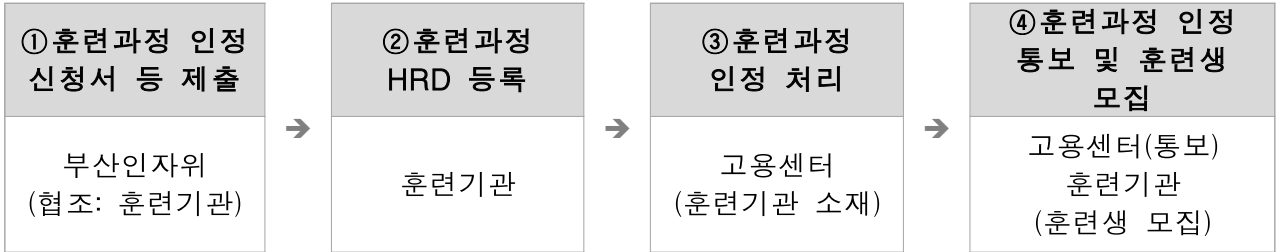
* 훈련과정의 정산은 심평원의 심사기준에 따른 산정기준을 준용, 정산계획 별도 시달 예정

** 기타간접비용은 10% 초과 사용(최대 15%) 시 전체 사용금액을 증빙하여야 하며 훈련관련성 및 적정성 확인 예정

4

2024년 제3차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확정 및 승인

□ 훈련과정의 인정 및 개설



① (부산인자위) 확정된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훈련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서'를 최소한 훈련개시일 10일 전까지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및 훈련기관 방문(승인받은 훈련시설·장비 확인 등)

※ 신청서 상에 기재된 훈련시설·장비 현황이 실재와 상이할 경우 훈련과정이 최종 불승인될 수 있음

② (훈련기관) HRD행정지원시스템에 해당 과정을 등록 처리 및 신청

· 훈련과정 입력사항

구 분	내 용
기본정보	훈련기관정보(기관명, 훈련기관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기관유형, 소재지), 훈련과정명(담당자 연락처 등), 주야 구분, 정원, 훈련일수(시간) 등
훈련과정 내용	훈련목표, 훈련가능인원, 훈련내용, 훈련시간표, 훈련대상자, 훈련수준 등
훈련과정 상세	훈련실시장소, 훈련시설, 훈련장비, 훈련교·강사, 훈련교재 등
훈련비 산출	훈련비 등

③ (고용센터) 제출된 신청서 및 실시계획서의 내용이 부산인자위에서 승인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최종 확인 후 인정 처리

④ (고용센터) 부산인자위의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및 실시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인정 통지서를 발급하여 부산인자위 및 훈련기관에 통지

□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발급

○ (고용센터)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개설된 훈련과정에 참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 또는 수강신청 등 모든 단계에서 기본적으로 진단·상담 생략

□ 훈련과정의 내용 변경

- (부산인자위 및 고용센터) 훈련기관이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기존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 제29조를 준용하여 변경 인정·신고 등의 절차 필요
- 훈련교·강사, 강의·실습실, 훈련장비·교재 등의 변경이 해당하며, 정원, 훈련비, 소정훈련시간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 불가
- ※ 다만,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28조제3항 등 심사평가기관(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미적용

< 훈련과정의 내용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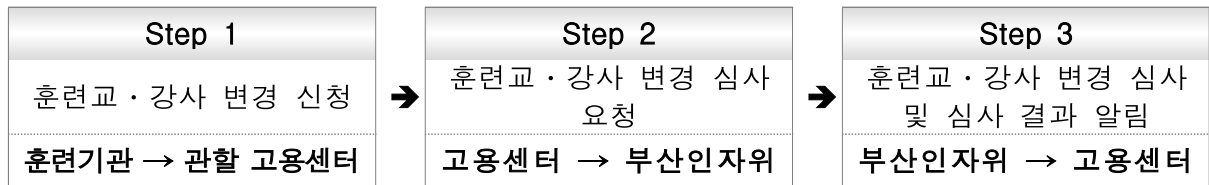
※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 제28조(일반계좌제 훈련과정의 변경인정) ① 일반계좌제 훈련과정을 인정받은 훈련기관이 인정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인정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원, 훈련비, 소정 훈련시간, 교과목별 시간수 등 훈련의 중요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변경예정일 3일 전까지 적정성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훈련기관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29조(일반계좌제 훈련과정의 변경신고) 제28조에도 불구하고 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변경예정일의 전일까지 HRD-Net을 통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인정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해당 훈련과정의 훈련 교·강사를 교과목별로 인정을 받은 훈련 교·강사 내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훈련 교·강사가 예비군 훈련, 본인의 결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어 임시 훈련 교·강사를 15일 이내에서 대체 사용하는 경우
 2. 해당 훈련기관의 시설인 인접한 건물 내에서 최초 인정받은 시설면적 이상인 강의실·실습실로 변경
 3. 노후, 불량 등으로 최초 인정받은 장비사양 이상의 것으로 장비 교체
 4. 최초 인정받은 훈련교재와 동일·유사한 훈련교재로 변경
 5. 최초 인정받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버전 이상의 것으로 변경
 6. 최초 인정받은 소정훈련시간 및 교과목별 시간수에 변동 없이 1일 8시간의 범위에서 훈련시간표를 변경하는 경우

○ 훈련내용 변경 시 유의사항

- **훈련 실시 전** 훈련과정 내용 변경 시 부산인자위와 사전 협의
- 훈련과정 교·강사 변경 인정의 기준
 - (요건 1) 변경 전 교·강사와 변경 예정 교·강사의 직종(NCS 소분류)이 일치할 것
 - (요건 2) 변경 예정 교·강사가 변경 전 교·강사와 점수가 동점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변경 가능
- ※ 단, 관할 고용센터의 요청 시 별도의 심사(부산인자위)를 통해 변경 인정 여부 판단

- 변경 예정 교·강사 점수가 기존 교·강사 점수보다 낮을 경우 별도의 심사(부산 인자위)를 통해 변경 인정 여부 판단
- 훈련교·강사 변경 절차



- 훈련교·강사 변경 심사 일정 및 제출 서류

신청기간*	심사기간	제출 서류
매월 1일 ~ 10일	당월 16일 ~ 2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련교·강사 변경 신청 공문 ○ 변경 전·후 교·강사 점수(해당 NCS 직종 점수) - HRD-Net 행정지원시스템의 교·강사 점수 캡처본 제출 ○ 변경 예정 교·강사의 이력(학력 및 경력 등) 증빙 서류 - (제출 유의사항) 경력 증명서의 경우 관련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 ex) 세부 수행 직무, 유사 강의 경력(교과목명 등) 등 ○ 훈련교·강사 변경 전·후 시간표
매월 16일 ~ 25일	익월 1일 ~ 5일	

* (신청기간) 훈련교·강사 변경 신청 공문 접수일(훈련기관 → 관할 고용센터) 기준

□ 훈련기관의 모니터링·컨설팅

○ (부산인자위) 훈련과정의 운영현황 수시 모니터링

- 훈련과정의 개설현황, 훈련실시인원 등을 토대로 훈련과정 개설 지연 등이 확인 되는 경우 훈련기관 컨설팅 지원
- 참여훈련기관 대상 간담회를 개최,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우수사례 공유 및 지원사항·개선사항 등 논의

□ 훈련과정 성과 관리

○ 정기 훈련계획 및 실적 제출

- 익월 훈련실시계획 및 당월 훈련실적을 매월 제출하여 성과 관리 실시

구분	산정기간	제출기한	비고
훈련실시계획	익월 1일~익월 말일	당월 20일, 12:00까지	양식 별도 안내
훈련실적	당월 1일~당월 말일	당월 말일, 12:00까지	

※ 제출기한 마지막 날이 휴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일까지 제출(busanhrd@korcham.net)

○ 월별 훈련과정 성과 취합

- (훈련과정 성과지표)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등

< 훈련과정 성과지표의 개념 및 산출방식 >

① 모집률: $\frac{\text{훈련참여인원수}}{\text{연간운영가능인원수}} \times 100$ ② 수료율: $\frac{\text{수료인원수}}{\text{훈련참여인원수}} \times 100$

③ 취업률: $\frac{\text{취업인원}}{\text{훈련수료인원(실업자)}} \times 100$

* 취업 여부의 판단, 취업률 산정방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에 따름

④ 전직취업률: $\frac{\text{고용보험 상실일 이후 180일 이내 고용보험을 재취득한 사람}}{\text{훈련수료인원(재직자) 중 훈련종료 이후 고용보험을 180일 이상 유지 못한 사람}} \times 100$

⑤ 고용유지율: $\frac{\text{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유지한 사람}}{\text{훈련종료일 이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람}} \times 100$

* 훈련과정 참여 시점에 실업자였던 자에 한하여 산정

⑥ 훈련생 만족도 점수: HRD-Net 수강평 만족도로 산정

※ 훈련과정 유형별 적용 성과지표 구분

- 재직자의 고용유지가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고용유지 훈련)
 - 모집률, 수료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 재직자의 전직 및 실업자의 취·창업이 주요 목적인 훈련과정(전직 및 취·창업훈련)
 - 모집률, 수료율, 취업률, 전직취업률, 고용유지율, 훈련생 만족도 점수

□ 훈련기관 지도·감독

○ (고용센터) 민원 등이 발생(신문고, 전화제보 등)하는 경우 조속히 현장 방문 등을 통해 확인하고, 필요 시 수사·특별감독 실시*

* 훈련목적에 위배될 정도로 위탁계약을 위반하여 훈련과정을 운영한 사항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 및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조치

□ 기타 사항

○ 훈련과정 승인, 카드발급, 훈련생 등록 등에 대하여 본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준수

5 기타사항

□ 훈련과정 유효기간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을 통해 개설되는 훈련과정은 유효기간(개설가능기간)을 1년으로 제한
 - 아울러, 훈련과정의 훈련기간은 최대 1년 이하로 제한
 - 유효기간의 개시일은 고용센터에서 인정 처리한 일자

□ 훈련과정 재인정 특례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훈련과정 운영을 승인받은 훈련기관이 승인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당 훈련과정 훈련가능인원의 60% 이상에 대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 부산인자위의 재심사 등 없이 절차**에 따라 훈련과정의 유효기간(1년) 및 훈련가능인원(기존 한도 내)에서 재부여

* (훈련실시)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훈련생 명단이 확정된 것을 의미

** ① (훈련기관) 훈련과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30일 이전, 부산인자위에 유효기간 연장 및 훈련가능인원 재부여 신청

② (부산인자위) 특례 요건 해당 여부 확인 후, 적정한 경우 훈련기관에 HRD-Net상 훈련과정 등록 처리 및 인정 신청을 안내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 요청 공문을 발송

③ (고용센터) 부산인자위로부터 공문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훈련과정 인정통지서를 발급하여 훈련기관 등에 통지

□ 훈련과정 성과의 활용

- '24년 이후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에 따라 훈련과정 심사에 있어 기존에 운영 이력이 있는 훈련과정에 대한 적정(승인) 여부 판단 근거 활용
- 훈련기관이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과 별도로 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24년 이후)에 참여하는 경우, '훈련기관의 역량평가*' 점수 산출 근거 활용

* (역량평가) 훈련기관별 취업률, 수요자 만족도 등을 산출 및 평가하여 저평가 기관은 참여 배제

6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및 접수기간: 2024. 8. 7.(수)~20.(화) 18:00까지

-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하며, 주말 및 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음
- 신청을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대해 **훈련과정일람표 사전 제출 필수**
 - 제출기한: 2024. 8. 13.(화) 낮 12:00까지
 - 제출방법: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이메일(busanhrd@korcham.net) 제출
 - 제출내용
 - 2024년 제3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일람표 1부
 - ※ (파일명) 2024년 제3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일람표_훈련기관명
 - 훈련기관 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서 1부
 - ※ (파일명) 2024년 제3차 산대특 훈련기관 정보 조회에 관한 동의서_훈련기관명
 - ※ 기한 내 훈련과정일람표 미제출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은 접수 불가

□ 제출서류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신청서
 - 2024년 제3차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신청 공문 및 신청서{원본(제본)} 1부
 - 2024년 제3차 부산지역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신청서 {사본(제본)} 5부
 - ※ 훈련과정 시간표 첨부하여 제본
 - 서약서 1부
 - 제반 서류(신청 공문 및 신청서, 시간표, 서약서 포함) 전자파일 일체(USB 제출)
 - ※ 훈련과정 시간표는 엑셀 파일 형식 제출(PDF 파일 형식 제출 불가)
- 기타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및 심사위원의 요청 서류 등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당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47354 부산광역시 황령대로 24(부산상공회의소) 10층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 문의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Tel. 051-990-7054)

7 선정절차 및 추진일정

주요업무	상세내용	일정
제3차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훈련과정 모집 공고	○ 부산인자위 홈페이지 공지	8. 7.(수)~20.(화)
↓		
제3차 모집 설명회 개최	○ 모집 산업·직종 발표 ○ 참여자격, 지원내용, 절차 및 일정 등 안내	8. 7.(수) 15:00
↓		
3차 훈련과정 계획서 신청, 접수	○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 제출 - 훈련과정일람표 사전제출: 8. 13(화) 12:00까지	8. 7.(수)~20.(화)
↓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심사	○ 훈련과정 적정성 및 훈련가능인원, 훈련비 등 심사	8. 27.(화)~28.(수)
↓		
훈련과정 인정 처리	○ (부산인자위) 훈련과정 인정신청서 제출 → (관할 고용센터) 훈련과정 인정 처리	9. 23.(월)~
↓		
훈련과정 인정 통보 및 훈련생 모집	○ 훈련생 선발 및 훈련 실시	10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